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92호 2017. 5. 17.(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 17-31호 거창승강장 농촌농공단지, 지역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
 도면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7-62호 도로명 주소 개별고시 49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59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소야마을 진입로(신원 305호선)
 개설공사] 51
 거창군 공고 제2017-598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1호선) 실시계획인가
 를 위한 공고 55
 거창군 공고 제2017-603호 재난위험시설(E등급) 지정 공고 58
 거창군 공고 제2017-606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59
 거창군 공고 제2017-60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80
 거창군 공고 제2017-608호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5

의 감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7-61호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2011. 08. 19)로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제2013-5호(2013. 01. 15), 제2014-85호(2014. 07. 25), 제2016-3호(2016. 01. 13), 제2016-42호(2016. 05. 4), 제2016-105호(2016. 10. 26)로 변경 승인·고시된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017. 5. 17.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국내에서 유일한 승강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산업 지대를 구축 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전략적 클러스터화
-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기존 지식의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 제고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나. 면 적 : 324,287㎡ ⇒ 308,151.1㎡ (감.16,135.9㎡)

※ 변경사유

- ① 북측 중로1-52호선 농공단지구역에서 금회 제척(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공영개발)”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첩구간 제척)
- ②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정정
- ③ 사업대상지와 연결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요구 주민의견 반영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7년 6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3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당(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주)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

○ 기정

구 분	합 계	목장용지	임	과수원	구거	전	답	기타
필지수	82	5	20	5	14	11	18	9
면적(㎡)	324,287	33,339	216,382	4,807	10,089	10,291	45,875	3,504
구성비(%)	100.0	10.3	66.7	1.5	3.1	3.2	14.1	1.1

○ 변경

구 분	합 계	공원	구거	대지	도로	유지	잡종지	공장	주차장
필지수	77	10	1	8	7	2	3	44	2
면적(㎡)	308,151.1	41,666.3	22.8	8,051.6	50,984.0	11,089.7	1,107.6	192,103.5	3,125.6
구성비(%)	100.0	13.5	0.1	2.6	16.5	3.6	0.4	62.3	1.0

나. 소유자별 현황

○ 기정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필지수	82	14	1	67	
면적(㎡)	324,287	10,089	625	313,573	
구성비(%)	100.0	3.1	0.2	96.7	

○ 변경

구 분	합 계	사업시행자	농림축산식품부	비 고
필지수	77	63	14	
면적(㎡)	308,151.1	298,062.1	10,089	
구성비(%)	100.0	96.7	3.3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전	변 경 후		
합 계	324,287	감)16,259.9	308,151.1	100.0	-
산업시설용지	192,221	감)117.5	192,103.5	62.3	-
지원시설용지	9,057	감)1,005.4	8,051.6	2.6	-
공공시설용지	123,009	감)15,013.0	107,996.0	35.1	-
도 로	62,400	감)11,413.6	50,986.4	16.5	-
주 차 장	3,255	감)129.4	3,125.6	1.0	2개소
송전철탑	1,040	증)67.6	1,107.6	0.4	3개소
송전선로	(13,321)	-	(13,321)	(4.3)	중복결정
공원·녹지	45,321	감)3,634.3	41,686.7	13.6	-
공 원	12,835	감)43.0	12,792.0	4.2	근린공원(1), 소공원(1)
녹 지	32,486	감)3,591.3	28,894.7	9.4	-
저 류 지	10,993	증)96.7	11,089.7	3.6	2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 계	기 정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0	20,100	2	538	7,434
	변 경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광 로	기 정	-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
대 로	기 정	-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
중 로	기 정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0	20,100	2	538	7,434
	변 경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소 로	기 정	-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
비 고	부측 중로1-52호선 동공단지구역에서 금회 제척(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공영개발)으로 추진)												

○ 도로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로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1	52	20	주간선 도로	516	중로1-51호선	남상면 월평리 산209구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금회 제척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로1-50호선	중로1-52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47	중로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532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29	중로1-50호선	완충녹지16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로1-50호선	중로1-50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로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380-10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433	1,661	감)315.5	1,345.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 경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387	1,594	증)186.1	1,780.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3) 공원계획(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공원	근린공원	남상면 대산리 2385	12,835	감)614.7	12,220.3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신설	30	공원	소공원	남상면 대산리 2432	-	증)571.7	571.7	-	

4) 녹지계획(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2	2,478	감)46.8	2,431.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6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40	4,709	증)5,197.1	9,90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폐지	17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40	7,871	감)7,871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8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9	3,630	감)25.8	3,604.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9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8	2,240	증)69.1	2,30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15	5,425	감)112.5	5,31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1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88	2,034	증)778.2	2,812.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2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9	2,891	감)895.3	1,995.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7	536	감)12.3	523.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949-17도 일원	672	-	67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금회 제척

5) 상수도계획(변경)

○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수요량 (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44	감)1	1,443	월평지점 분기점에 증계펌프장을 설치하고 거창 일반산업단지내 배수지로 송수하여 사업대상지내 연결관로를 통해 공급
공 업 용 수	1,248	감)1	1,247	
생 활 용 수	196	-	196	

6) 하수도계획(변경)

○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량 (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24	감)2	922	차집후 동측 거창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에 연결하여 최종 거창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공 업 폐 수	766	감)2	764	
생 활 오 수	158	-	158	

7) 우수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10,993	증)96.7	11,089.7	-	
변경	3	우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420	8,174	증)97.6	8,271.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4	우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378	2,819	감)0.9	2,818.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8)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량

구 분	전력사용량 (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41,214	감)373	40,841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040	증)67.6	1,107.6	-	
변경	2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423	448	감)2.0	446.0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변경	3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86	286	증)70.7	356.7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변경	4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94	306	감)1.1	304.9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남상면 월평리 산68	남상면 대산리 산68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9. 재원조달 계획(별첨)

가. 자금조달

- 총 사업비 30,416백만원에 대하여 국비 6,524백만원, 도비 466백만원, 군비 466백만원, 자체자금 22,960백만원을 투입하여 자금 조달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1,611	감)1,195	30,416	100.0	
조사설계비	소 계	753	증)438	1,191	3.9	
	측량비	248	감)30	218	0.7	
	설계비	505	증)468	973	3.2	
공사비		19,829	감)615	19,214	63.2	
보상비		8,504	감)474	8,030	26.4	
간접비	소 계	2,525	감)544	1,981	6.5	
	감리비	521	증)119	640	2.1	
	부대비	1,749	감)709	1,040	3.4	
	시행관리비	208	증)93	301	1.0	
	건설이자	47	감)47	-	-	

1) 부지공사비 19,214백만원은 2012년 설계당시 단가로 산정된 18,568백만원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임.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준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사 설계비	조사비	248	218	19	19	-	-	229	199
	설계비	505	973	-	-	390	390	115	583
공사비		19,829	19,214	4,582	4,582	11,743	11,743	3,504	2,889
보상비		8,504	8,030	15	15	8,489	8,489	-	-474
간접비	감리비	521	640	120	120	268	268	133	252
	부대비	1,749	1,040	168	168	401	401	1,180	471
	시행관리비	208	301	34	34	116	116	58	151
	건설이자	47	-	-	-	-	-	47	-
총 투자비		31,611	30,416	4,938	4,938	21,407	21,407	5,266	4,071

10. 수용·사용할 기계·건설물, 감액 물적 자산 관리가 있는 경우
 예는 그 세목 : 불입(건설)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2,221	감)117.5	192,103.5	100.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2,446	감)16.1	132,429.9	68.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05	증)35.0	26,140.0	13.6	
[C28] 전기장비 제조업	33,670	감)136.4	33,533.6	17.5	

1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

○ 기 정

가. 오·폐수 처리(연계처리) : 오·폐수 압송관로(D200mm, 700m)

나. 군계획시설(진입도로) 개설사업 : L=516m, B=20m

○ 변 경

가. 오·폐수 처리(연계처리) : 오·폐수 압송관로(D200mm, 700m)

※기정 진입도로 개설 지원계획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공영개발)”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원계획에서 제외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거창군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농공단지 총 면적	324,287	308,151.1	100.0	100.0	
거창군 귀속 면적	119,774	117,628.8	36	33.7	
공공시설용지	119,774	117,628.8	36	33	
도 로	40	50,960	19.2	16.5	거창군 귀속
송전철탑	1,040	-	0.3	-	
공 원	12,835	12,792.0	4.0	4.2	거창군 귀속
녹 지	32,486	28,894.7	10.0	9.4	거창군 귀속
저 류 지	10,993	11,089.7	3.4	3.6	거창군 귀속
용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우수처리시설	1식	1식	-	-	거창군 귀속 (면적은 도로에 포함)

나. 사업시행자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농공단지 총 면적	324,287	308,151.1	100.0	100.0	
사업시행자 귀속 면적	204,533	204,388.3	63.1	66.3	
산업시설용지	192,221	192,103.5	59.3	62.3	사업시행자 귀속
지원시설용지	9,057	8,051.6	2.8	2.6	사업시행자 귀속
주 차 장	3,255	3,125.6	1.0	1.0	사업시행자 귀속
송전철탑	-	1,107.6	-	0.4	사업시행자 귀속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 지역	소 계	4,874,062	-	4,874,062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	1,464,9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1,543	-	3,211,543	0.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430	-	137,430	0.02	-
	준주거지역	60,134	-	60,134	0.01	-
상업 지역	소 계	-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	-	347,740	0.04	-
	관광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 지역	소 계	1,267,345	-	1,267,3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38,903	-	1,238,9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 지역	소 계	25,417,317	-	25,417,317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3,291	-	7,713,29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9,266	-	16,049,266	1.99	-
관리 지역	소 계	261,932,627	-	261,932,627	32.57	-
	관리지역	-	-	-	-	-
	보전관리지역	171,843,404	-	171,843,404	21.37	-
	생산관리지역	8,213,818	-	8,213,818	1.02	-
	계획관리지역	81,875,405	-	81,875,405	10.18	-
농림지역		469,363,666	-	469,363,666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125	-	40,942,125	5.09	-
미지정		-	-	-	-	-

※ 기 정 : 거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2016.12.29), 경상남도 고시 제2016-515호

2) 용도지역 결정 조서(지구내)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4,287	감)16,135.9	308,151.1	100.0		
관리 지역	소 계	324,287	감)16,135.9	308,151.1	100.0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324,287	감)16,135.9	308,151.1	100.0	북측 중로1-52호선 산업단지구역에서 금회 제척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21	승정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324,287	감)16,135.9	308,151.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2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324,287m ² → 308,151.1m ² 감)16,135.9m ²	· 북측 중로1-52호선 산업단지구역에서 금회 제척(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연결 도로 확장사업(공영개발)”으로 추진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정정 · 사업대상지와 연결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주민의견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0	20,100	2	538	7,434
	변경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8	3,164	62,400	2	1,460	34,866	4	1,160	20,100	2	538	7,434
	변경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비고	북측 중로1-52호선 공단지구역에서 남측 중로1-52호선(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연결도) 확장사업(공영개발)으로 추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간선	944	중로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1	52	20	주간선도로	516	중로1-51호선	남상면 월평리 산209구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금회제척
기정	중로	2	42	15	집산도로	269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도로	450	중로1-50호선	중로1-52호선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도로	400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도로	47	중로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532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중로	2	45	15	국지도로	29	중로1-50호선	완충녹지16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도로	401	중로1-50호선	중로1-50호선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도로	137	중로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380-10	일반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5호선	중로2-45호선	· 도로연장 축소 - L = 47m → 29m 감)18m	사업대상지와 연결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요구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지 경계 변경으로 도로 연장 축소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433	1,661	감)315.5	1,345.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 경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387	1,594	증)186.1	1,780.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 주차장	·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 1,661㎡ → 1,345.5㎡ 감)315.5㎡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을 위해 기정 주차장 일부 축소
2	노외 주차장	·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 1,594㎡ → 1,780.1㎡ 증)186.1㎡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노상주차 방지 등을 위한 산업단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 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공원	근린공원	남상면 대산리 2385	12,835	감)614.7	12,220.3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신설	30	공원	소공원	남상면 대산리 2432	-	증)571.7	571.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12,835㎡ → 12,220.3㎡ 감)614.7㎡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노상주차 방지 등을 위한 노외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일부 축소
30	공원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571.7㎡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2	2,478	감)46.8	2,431.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6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40	4,709	증)5,197.1	9,90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폐지	17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40	7,871	감)7,871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8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9	3,630	감)25.8	3,604.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19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8	2,240	증)69.1	2,30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15	5,425	감)112.5	5,31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1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88	2,034	증)778.2	2,812.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2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9	2,891	감)895.3	1,995.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7	536	감)12.3	523.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2	2,478	-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금회 제척

■ 녹지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2,478㎡ → 2,431.2㎡ 감)46.8㎡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6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4,709㎡ → 9,906.1㎡ 증)5,197.1㎡	중로2-45호선의 연장 변경으로 인해 연결되는 녹지16, 녹지17에 대하여 효율적인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해 녹지 16으로 통합하여 결정함에 따라 경관녹지 면적 증가
17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7,871㎡ → - m 감)7,871㎡	중로2-45호선의 연장 변경으로 인해 연결되는 녹지16, 녹지17에 대하여 효율적인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해 녹지 16으로 통합하여 결정함에 따라 경관녹지 폐지
18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3,630㎡ → 3,604.2㎡ 감)25.8㎡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9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2,240㎡ → 2,309.1㎡ 증)69.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0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5,425㎡ → 5,312.5㎡ 감)112.5㎡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1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2,034㎡ → 2,812.2㎡ 증)778.2㎡	인접한 군계획시설(주차장2) 변경으로 사업대상지 경계부 녹지 추가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증가
22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2,891㎡ → 1,995.7㎡ 감)895.3㎡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요구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지 경계 변경으로 경관녹지 면적 감소
23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536㎡ → 523.7㎡ 감)12.3㎡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423	448	감)2.0	446.0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변경	3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86	286	증)70.7	356.7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변경	4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94	306	감)1.1	304.9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사유	변경사유
2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면적 변경 - 448 m ² → 446.0 m ²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면적 변경 - 286 m ² → 356.7 m ² 증)70.7 m ²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면적 변경 - 306 m ² → 304.9 m ² 감)1.1 m ²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남상면 월평리 산68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라) 방재시설

○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420	8,174	증)97.6	8,271.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변경	4	유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378	2,819	감)0.9	2,818.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유수지 (저류시설)	· 유수지(저류시설) 면적 변경 - 8,174m ² → 8,271.6m ² (증)97.6m ²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유수지 (저류시설)	· 유수지(저류시설) 면적 변경 - 2,819m ² → 2,818.1m ² (감)0.9m ²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위 치		면적(m ²)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92,221	192,103.5	-		192,221	192,103.5	-
A1	A1	25,725	25,715.3	1	1	7,481	7,478.7	획지내 필지 분할·합병 가능
				2	2	7,509	7,506.6	
				3	3	6,495	6,492.7	
				4	4	4,240	4,237.3	
A2	A2	33,824	33,819.9	1	1	3,216	3,215.8	
				2	2	3,571	3,569.8	
				3	3	3,571	3,569.9	
				4	4	3,571	3,570.0	
				5	5	3,649	3,649.8	
				6	6	2,976	2,976.3	
				7	7	3,521	3,520.1	
				8	8	3,537	3,537.2	
				9	9	3,482	3,481.3	
				10	10	2,730	2,729.7	
A3	A3	22,935	22,935	1	1	5,219	5,219.5	
				2	2	5,149	5,147.5	
				3	3	5,011	5,010.5	
				4	4	4,310	4,308.5	
				5	5	3,247	3,245.3	
A4	A4	49,961	49,962.2	1	1	4,089	4,089.1	
				2	2	4,235	4,235.9	
				3	3	4,253	4,252.9	
				4	4	4,253	4,252.7	
				5	5	4,168	4,167.8	
				6	6	2,762	2,758.9	
				7	7	3,938	3,941.2	
				8	8	4,230	4,230.8	
				9	9	4,253	4,252.9	
				10	10	4,253	4,252.9	
				11	11	4,240	4,239.7	
				12	12	2,691	2,690.0	
				13	13	2,598	2,597.4	
A5	A5	10,539	10,574.6	1	1	4,648	4,684.1	
				2	2	5,891	5,890.5	
A6	A6	15,566	15,565.4	1	1	9,583	9,582.2	
				2	2	5,983	5,983.2	
A7	A7	7,346	7,209.9	1	1	3,670	3,649.7	
				2	2	3,676	3,560.2	
A8	A8	18,143	18,143.9	1	1	4,482	4,480.7	
				2	2	4,201	4,204.4	
				3	3	4,730	4,729.7	
				4	4	4,730	4,729.1	
A9	A9	8,181	8,179.8	1	1	4,099	4,098.8	
				2	2	4,082	4,081.0	

■ 산업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	A1	남상면 대산리 2373 일원	· 면적 변경 - 25,725㎡ → 25,715.3㎡ 감)9.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2	A2	남상면 대산리 2389 일원	· 면적 변경 - 33,824㎡ → 33,819.9㎡ 감)4.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3	A3	남상면 대산리 2380 일원	· 면적 변경 - 22,936㎡ → 22,932.5㎡ 감)3.5㎡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4	A4	남상면 대산리 2400 일원	· 면적 변경 - 49,961㎡ → 49,962.2㎡ 증)1.2㎡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5	A5	남상면 대산리 2413 일원	· 면적 변경 - 10,539㎡ → 10,574.6㎡ 증)35.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6	A6	남상면 대산리 2416 일원	· 면적 변경 - 15,566㎡ → 15,565.4㎡ 감)0.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7	A7	남상면 대산리 2418 일원	· 면적 변경 - 7,346㎡ → 7,209.9㎡ 감)136.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8	A8	남상면 대산리 2421 일원	· 면적 변경 - 18,143㎡ → 18,143.9㎡ 증)0.9㎡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A9	A9	남상면 대산리 2426 일원	· 면적 변경 - 8,181㎡ → 8,181.8㎡ 증)0.8㎡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지원시설용지(농업)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057	8,051.6	-	-	9,057	8,051.6	
B1	B1	2,368	1,869.8	1	1	816	868.0	획지내 필지 분할·합병 가능
				2	2	726	1,001.8	
				3	2	826	1,001.8	
B2	B2	6,689	6,181.8	1	1	1,395	737.3	
				2	2	962	1,015.9	
				3	3	1,664	982.0	
					4	1,664	969.7	
				4	5	2,668	963.4	
					6	2,668	1,513.5	

■ 지원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1	B1	남상면 대산리 2430 일원	· 면적 변경 - 2,368㎡ → 1,869.8㎡ 감)498.2㎡ · 획지 변경 - 1, 2 → 1 - 3 → 2	사업대상지와 연결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요구 민원사항 반영으로 지원시설의 용지의 획지구모 변경
B2	B2	남상면 대산리 2434 일원	· 면적 변경 - 6,689㎡ → 6,181.8㎡ 감)507.2㎡ · 획지 변경 - 3 → 3, 4 - 4 → 5, 6	사업대상지와 연결한 농업기반시설부지 제척 요구 민원사항 반영으로 지원시설의 용지의 획지구모 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A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운수시설,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60%이하
			변경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A5, A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운수시설,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60%이하
			변경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A7~A9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 운수시설, 창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60%이하
			변경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산업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A1~A4	• 건폐율 변경 : 60% → 70%	거창군계획조례 제54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2012. 1.11)사항 반영
-	A5~A6	• 건폐율 변경 : 60% → 70%	거창군계획조례 제54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2012. 1.11)사항 반영
-	A7~A9	• 건폐율 변경 : 60% → 70%	거창군계획조례 제54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2012. 1.11)사항 반영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B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60%이하
				변경	• 70% 이하
			용	물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한계선

■ 지원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B1, B2	• 건폐율 변경 : 60% → 70%	거창군계획조례 제54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2012. 1.11)사항 반영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공원21(근린공원)

■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2,835.0	12,220.3	12,835.0	1,371.1	시설율:11.2% (법정40%이하)
기반시설	도로, 광장	1,435.8	1,311.3	1,435.8	1,311.3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외 1종	35.9	35.9	35.9	35.9	
휴양시설	평의자 외 1종	13.5	13.5	13.5	13.5	
운동시설	족구장 외 5종	325.0	-	325.0	-	
편익시설	전망휴게소	28.0	28.0	28.0	28.0	
녹지 및 기타	녹 지	10,996.8	10,849.2	10,996.8	-	녹지율:89.9% (법정60%이상)

■ 시설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2,835.0	12,220.3	12,835.0	1,371.1	
기반 시설	소 계		1,435.8	1,311.3	1,435.8	1,311.3	
	가	도로	915.5	878.3	915.5	878.3	
	가-1	광장(소계)	520.0	433.0	520.0	333.0	
	가-1	다목적광	328.0	287.0	328.0	328.0	
	가-2	진입광장	43.0	43.0	43.0	43.0	
	가-3	진입광장	87.5	-	87.5	-	
	가-4	휴게광장	62.0	62.0	62.0	62.0	
조경 시설	소 계		35.9	-	35.9	-	
	①	사각파고라	17.6	-	17.6	-	
	②	정자	18.3	18.3	18.3	18.3	
휴양 시설	소 계		13.5	13.5	13.5	13.5	
	③	평 의 자	-	13.5	-	13.5	
	④	연식의자	13.5	-	13.5	-	
운동 시설	소 계		325.0	-	325.0	-	
	나	족구장	325.0	-	325.0	-	
	⑤	TM롤링웨이트	-	-	-	-	
	⑥	TM레그프레스	-	-	-	-	
	⑦	TM트윈바디실업	-	-	-	-	
	⑧	TM스트레칭로라	-	-	-	-	
	⑨	TM크로스컨트리	-	-	-	-	
편익 시설	소 계		28.0	28.0	28.0	28.0	
	다	전망휴게소	28.0	28.0	28.0	28.0	
녹지 및 기타	소 계		10,996.8	10,849.2	10,996.8	-	
		녹 지	10,996.8	10,849.2	10,996.8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301.0	915.3				
변경					284.5	878.3				
기정	소로	3	1	2.0	69.5	144.5	진입로	가-2광장	가-1광장	
기정	소로	3	2	4.0	152.0	620.0	진입로	경계부	가-1광장	
변경	소로	3	2	4.0	152.0	608.0	진입로	경계부	가-1광장	
기정	소로	3	3	2.0	63.0	125.8	연결로	소로3-2	가-4광장	
기정	소로	3	4	1.5	16.5	25.0	연결로	가-4광장	경계부	
변경	소로	3	4	-	-	-	연결로	-	-	

2) 공원30(소공원)

■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571.7	-	91.1	시설율:15.9% (법정20%이하)
기반시설	도로	-	74.8	-	74.8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	16.3	-	16.3	
녹지 및 기타	녹지	-	480.6	-	-	녹지율:84.1% (법정60%이상)

■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571.7	-	91.1	
기반시설	소계		-	74.8	-	74.8	
		도로	-	74.8	-	74.8	
조경시설	소계		-	16.3	-	16.3	
	①	사각파고라	-	16.3	-	16.3	
녹지 및 기타	소계		-	480.6	-	-	
		녹지	-	480.6	-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49.4	74.8				
신설	소로	3	1	1.8	7.0	12.6	진입로	경계부	파고라	
신설	소로	3	2	1.8	16.4	29.6	연결로	파고라	녹지	
신설	소로	3	3	1.8	8.2	14.8	진입로	경계부	소로3-2	
신설	소로	3	4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신설	소로	3	5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 기반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수립·시행되는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및 건축물,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 원칙)

-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능한 지정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본 농공단지가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권장사항적 성격을 가진다.
- ④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 ⑤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다음 각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해당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허용용도”라 함은 당해 가구 또는 획지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③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④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계획의 선과 인접한 공지로서 전도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와 같다.
- 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⑥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 ⑦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⑧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필)

- ① 유치업종별 개발여건과 사업체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입주유도를 위해 제시한 획지계획선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토록 한다.
- ② 입주업체의 여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한 최소 필지 규모 900㎡이상에서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

제6조 (허용용도)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산업시설용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허용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가 임지를 허용한다
- ② 허용용도 이외 축적 입지는 원칙적으로 부속하며, 지내 일수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입지가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허용되 이 경우에는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허 용 내 용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③ 표준산업분류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서 정한 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제7조 (용적률)

- ① 용적률은 150% 이하로 적용한다.
- ② 도면표시

용적률	150	

제8조 (건폐율)

- ① 건폐율은 70% 이하를 적용한다.
- ② 도면표시

건폐율		
	70	

제9조 (최고 층수)

- ① 최고층수는 따라 4층 이하로 한다.
- ②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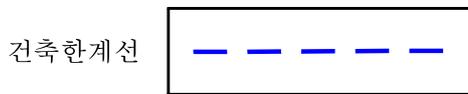
최고층수	4

▣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최고층수	비 고
산업용지내 부대시설	4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4층 이하	

제10조 (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게 건축할 수 없다.
- ② 각 획지내 건축되는 건축물의 벽면은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2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식재 등을 통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 ④ 도면표시



제11조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은 가로 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로형 간판은 1업체당 1개소 설치, 건축물 최상단 가로 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하고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상과 재질을 사용”



제12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공장 건축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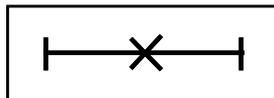
제13조 (담장의 처리)

- ① 전통적인 공업시설은 그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의무화한다.
- ②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공원·녹지 등과 면한 담장은 1m 이하의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이용자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 ① 주요 교차지점에서 10m이내는 차량출입을 불허한다.
- ②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 원칙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관계국(시)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도면표시

차량출입 불허구간



제15조 (차량출입 허용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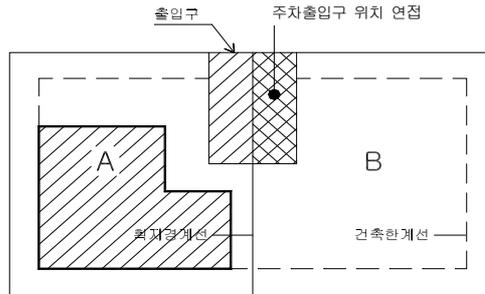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는 도로와 접한 대지는 원칙적으로 차량진·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침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차 출입구)

- ① 산업시설용지내 두 변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도로의 위계상 하위체계의 도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접대지의 경계부에 주차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③ 예시도



제17조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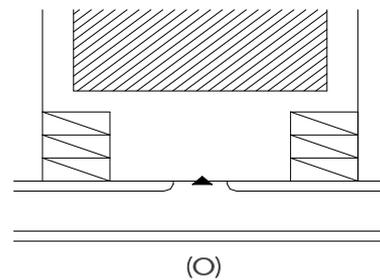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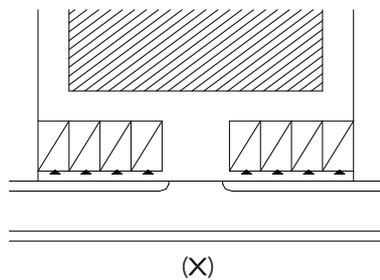
① 도로를 주차통로로 이용하는 직접주차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지내 동선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지의 지형상 부득이 하다고 관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서는 그러하다.

②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간의 지시 부속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10%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③ 산업시설용지 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한다.

④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거창군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③ 예시도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8조 (획지의 분할 및 합필)

- ① 입주업체의 여건에 따라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

제19조 (허용용도)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산업지원시설용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허용한다.
- ②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입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대지내 일부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입지가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허용 내 용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6종 · 7종 · 8종 · 9종 · 10종 · 11종 · 12종 · 13종 · 14종 · 15종 · 16종 · 17종 · 18종 · 19종 · 20종 · 21종 · 22종 · 23종 · 24종 · 25종 · 26종 · 27종 · 28종 · 29종 · 30종 · 31종 · 32종 · 33종 · 34종 · 35종 · 36종 · 37종 · 38종 · 39종 · 40종 · 41종 · 42종 · 43종 · 44종 · 45종 · 46종 · 47종 · 48종 · 49종 · 50종 · 51종 · 52종 · 53종 · 54종 · 55종 · 56종 · 57종 · 58종 · 59종 · 60종 · 61종 · 62종 · 63종 · 64종 · 65종 · 66종 · 67종 · 68종 · 69종 · 70종 · 71종 · 72종 · 73종 · 74종 · 75종 · 76종 · 77종 · 78종 · 79종 · 80종 · 81종 · 82종 · 83종 · 84종 · 85종 · 86종 · 87종 · 88종 · 89종 · 90종 · 91종 · 92종 · 93종 · 94종 · 95종 · 96종 · 97종 · 98종 · 99종 · 100종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6종 · 7종 · 8종 · 9종 · 10종 · 11종 · 12종 · 13종 · 14종 · 15종 · 16종 · 17종 · 18종 · 19종 · 20종 · 21종 · 22종 · 23종 · 24종 · 25종 · 26종 · 27종 · 28종 · 29종 · 30종 · 31종 · 32종 · 33종 · 34종 · 35종 · 36종 · 37종 · 38종 · 39종 · 40종 · 41종 · 42종 · 43종 · 44종 · 45종 · 46종 · 47종 · 48종 · 49종 · 50종 · 51종 · 52종 · 53종 · 54종 · 55종 · 56종 · 57종 · 58종 · 59종 · 60종 · 61종 · 62종 · 63종 · 64종 · 65종 · 66종 · 67종 · 68종 · 69종 · 70종 · 71종 · 72종 · 73종 · 74종 · 75종 · 76종 · 77종 · 78종 · 79종 · 80종 · 81종 · 82종 · 83종 · 84종 · 85종 · 86종 · 87종 · 88종 · 89종 · 90종 · 91종 · 92종 · 93종 · 94종 · 95종 · 96종 · 97종 · 98종 · 99종 · 100종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제20조 (용적률)

- ① 용적률은 「거창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0% 이하로 적용한다.
- ② 도면표시

용적률	150	

제21조 (건폐율)

- ① 건폐율은 「거창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를 적용한다.
- ② 도면표시

건폐율

70	

제22조 (최고층수)

- ① 최고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 ② 도면표시

최고층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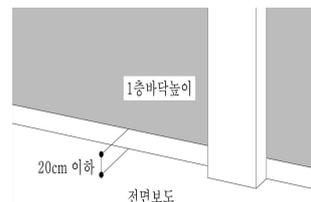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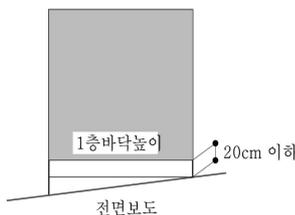
제23조 (건물의 방향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기안지속용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와 평행하고 기둥길 일지하도록 한다.

제2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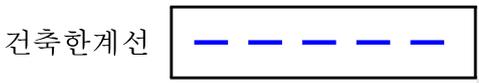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유리로 된 재료를 사용할 시에는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도와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 ④ 예시도

▶ 1층 바닥높이



제25조 (건축한계선)

-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게 건축할 수 없다.
- ② 각 획지내 건축되는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를 기준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③ ②항의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생기는 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에 이용토록 하며, 이를 위해 통행에 지장이 되는 주차, 화분, 식재, 담장 및 도로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의 설치나 적재를 할 수 없다.
- ④ 도면표시



제26조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 ①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외관관리법」 옥외광고물 조항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광고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제11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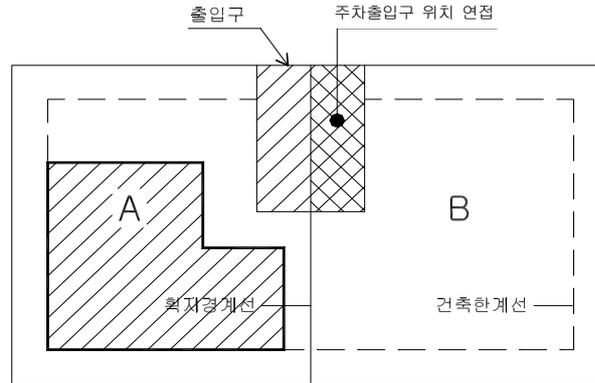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지원시설 건축물의 건축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28조 (주차출입구 진출입)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 ②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결대지의 경계부에 주차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③ 예시도



제29조 (주차장)

- 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10%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③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에 권장하되,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 계획을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형” 기계식 주차장(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나))을 허용하고, 승강기의 차량출입을 보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계식승강기를 권장한다.
- ④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등 주차설비 설치시 가로 및 도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내에 일체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4장 기타 기반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제30조 (주차장의 설치)

- ①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거창군 주차장 조례」에 의한다.
- ②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거창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주차장 부지내에 녹음수를 식재하여 그늘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31조 (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2조 (지침의 조정)

- ① 본 지침상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로 개별 건축주의 설계 등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더욱 구체화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군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2.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사전 심의를 득한 경우
 - 3.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제33조 (지침의 적용변이)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구역내에서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 ② 건축법 제2조1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시에도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허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사업준공 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 절차를 따르며, 사업준공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 ②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곧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

■ 기 정

좌표번호	X(N)	Y(E)	좌표번호	X(N)	Y(E)
G1	240,358.5211	283,305.1667	G50	239,822.5961	283,594.1545
G2	240,357.5697	283,306.7350	G51	239,824.0647	283,593.1374
G3	240,354.5611	283,311.6944	G52	239,833.3291	283,604.9113
G4	240,353.3136	283,313.1541	G53	239,841.5930	283,612.5398
G5	240,345.2958	283,322.5361	G54	239,863.5961	283,629.4757
G6	240,336.6876	283,328.2704	G55	239,870.9959	283,635.0923
G7	240,333.3931	283,326.0179	G56	239,875.3456	283,637.9844
G8	240,323.8606	283,319.5015	G57	239,886.6350	283,642.7558
G9	240,306.8761	283,302.6425	G58	239,897.5338	283,644.5544
G10	240,298.0527	283,294.3053	G59	239,900.6694	283,645.7809
G11	240,284.2315	283,287.8491	G60	239,908.1641	283,650.5045
G12	240,274.1905	283,291.8822	G61	239,906.1384	283,651.8199
G13	240,264.5741	283,293.8793	G62	239,940.9432	283,676.1819
G14	240,254.6337	283,300.3028	G63	239,941.2160	283,676.7595
G15	240,245.7570	283,303.0139	G64	239,943.9149	283,682.4788
G16	240,240.4591	283,302.0895	G65	239,948.4831	283,689.0262
G17	240,237.6351	283,303.2482	G66	239,955.8434	283,698.9455
G18	240,232.2250	283,305.3117	G67	239,956.5478	283,701.3697
G19	240,214.2566	283,312.2222	G68	239,958.9749	283,706.0203
G20	240,204.6408	283,321.9523	G69	239,966.0007	283,718.4737
G21	240,199.2522	283,320.0004	G70	239,969.2200	283,724.7675
G22	240,189.3076	283,320.0111	G71	239,975.9000	283,724.7548
G23	240,143.0079	283,345.0400	G72	239,980.0012	283,724.6464
G24	240,064.2979	283,376.5110	G73	239,922.0729	283,723.0575
G25	239,995.1136	283,375.0960	G74	239,908.4805	283,722.1428
G26	239,992.3302	283,367.9808	G75	239,893.6211	283,720.9989
G27	239,936.8179	283,380.6247	G76	239,862.1258	283,718.4520
G28	239,925.8949	283,426.9925	G77	239,850.0536	283,715.8131
G29	239,916.5416	283,446.6368	G78	239,766.4086	283,710.8646
G30	239,909.2840	283,463.2949	G79	239,753.0486	283,709.8182
G31	239,900.3108	283,483.8297	G80	239,741.4277	283,707.3851
G32	239,846.7106	283,464.0100	G81	239,697.7945	283,699.9071
G33	239,808.5262	283,471.0162	G82	239,676.5794	283,686.3009
G34	239,790.4301	283,482.0596	G83	239,654.3235	283,687.7149
G35	239,777.2805	283,508.6606	G84	239,647.4501	283,691.8956
G36	239,795.3701	283,531.6585	G85	239,631.4077	283,689.6470
G37	239,794.4393	283,538.4147	G86	239,575.7037	283,681.8391
G38	239,794.7001	283,544.3006	G87	239,552.5834	283,684.8110
G39	239,795.7112	283,549.1621	G88	239,543.5888	283,681.9224
G40	239,797.2896	283,552.9517	G89	239,530.6901	283,677.6097
G41	239,800.7517	283,559.4556	G90	239,536.3894	283,547.0775
G42	239,804.3344	283,563.3856	G91	239,517.8316	283,523.4008
G43	239,810.6514	283,575.4646	G92	239,518.9243	283,498.3747
G44	239,810.9077	283,576.0185	G93	239,539.8279	283,468.3254
G45	239,802.8028	283,580.7743	G94	239,541.6799	283,425.9086
G46	239,803.7683	283,584.6725	G95	239,517.3366	283,401.2443
G47	239,806.5692	283,584.4415	G96	239,514.4762	283,396.3865
G48	239,810.4760	283,600.2233	G97	239,511.5110	283,380.5326
G49	239,822.2377	283,592.0773	G98	239,521.8937	283,366.0709

좌표번호	X(N)	Y(E)	좌표번호	X(N)	Y(E)
G99	239,522.6935	283,364.9569			
G100	239,523.4466	283,364.6085			
G101	239,529.5256	283,361.7972			
G102	239,541.9123	283,351.8999			
G103	239,558.8076	283,338.7378			
G104	239,572.5313	283,339.2737			
G105	239,597.3016	283,333.5266			
G106	239,612.1975	283,335.9761			
G107	239,617.3335	283,336.5147			
G108	239,629.3481	283,333.5737			
G109	239,670.6330	283,318.4998			
G110	239,669.0689	283,311.8742			
G111	239,675.3011	283,302.5305			
G112	239,678.6128	283,297.5651			
G113	239,684.9078	283,292.4360			
G114	239,690.7344	283,290.6381			
G115	239,696.7866	283,282.4243			
G116	239,698.3483	283,279.7164			
G117	239,702.1205	283,273.1758			
G118	239,710.3324	283,264.9231			
G119	239,715.7942	283,266.2842			
G120	239,721.9735	283,260.0000			
G121	239,763.9700	283,212.9837			
G122	239,746.8190	283,196.1000			
G123	239,757.1000	283,178.5000			
G124	239,762.0000	283,174.9000			
G125	239,770.2385	283,170.5149			
G126	239,791.1985	283,166.8257			
G127	239,803.1375	283,139.7633			
G128	239,808.6997	283,123.3507			
G129	239,823.0326	283,092.1505			
G130	239,840.3613	283,081.5858			
G131	239,861.9412	283,070.6465			
G132	239,871.1967	283,059.3199			
G133	239,872.4439	283,055.7768			
G134	239,887.4546	283,049.3141			
G135	239,905.7499	283,039.7539			
G136	239,911.2383	283,023.9410			
G137	239,974.1383	283,003.9049			
G138	239,986.6451	282,971.2303			
G139	239,991.0224	282,964.2064			
G140	240,048.7645	282,936.9364			
G141	240,102.2632	282,882.5222			
G142	240,138.2093	282,903.5501			
G143	240,185.0507	282,944.6282			
G144	240,231.6888	283,004.6933			
G145	240,255.7923	283,046.3601			
G146	240,288.5872	283,129.0626			
G147	240,298.8334	283,149.8846			
G148	240,334.9661	283,210.5649			
G149	240,358.0317	283,289.5320			

■ 변경

좌표번호	X(N)	Y(E)	좌표번호	X(N)	Y(E)
G1	240,326.7833	283,241.2745	G52	239,801.6364	283,534.7930
G2	240,334.0561	283,265.2875	G53	239,800.2993	283,541.8826
G3	240,337.0323	283,290.2012	G54	239,800.2691	283,547.7744
G4	240,337.6045	283,308.4963	G55	239,801.0390	283,552.6798
G5	240,338.1924	283,327.2742	G56	239,802.4278	283,556.5424
G6	240,336.6816	283,328.2812	G57	239,805.5640	283,563.2100
G7	240,323.8546	283,319.5122	G58	239,808.9481	283,567.3120
G8	240,306.8703	283,302.6531	G59	239,813.2506	283,576.6334
G9	240,298.0469	283,294.3158	G60	239,814.6610	283,579.6884
G10	240,284.2258	283,287.8595	G61	239,806.5560	283,584.4442
G11	240,274.7874	283,281.9842	G62	239,810.4678	283,600.2299
G12	240,272.9079	283,279.7190	G63	239,815.5405	283,604.4376
G13	240,265.9917	283,283.5154	G64	239,823.4181	283,598.9823
G14	240,264.1063	283,284.5499	G65	239,822.5879	283,594.1612
G15	240,239.1502	283,297.6801	G66	239,824.0566	283,593.1441
G16	240,236.1611	283,299.2803	G67	239,833.3209	283,604.9182
G17	240,233.5767	283,300.6651	G68	239,841.5847	283,612.5467
G18	240,229.4152	283,302.8942	G69	239,863.5877	283,629.4828
G19	240,220.0631	283,307.9024	G70	239,873.5238	283,639.7138
G20	240,213.6182	283,311.0691	G71	239,877.8735	283,642.6060
G21	240,207.1019	283,314.2	G72	239,888.0769	283,647.8816
G22	240,199.9239	283,317.7840	G73	239,888.1	283,647.8683
G23	240,196.0	283,310.12	G74	239,894.0	283,647.8319
G24	240,188.0	283,306.27	G75	239,902.4	283,649.6287
G25	240,186.0	283,307.331	G76	239,903.046	283,649.7794
G26	240,185.0893	283,308.1868	G77	239,906.1102	283,651.8427
G27	240,183.9889	283,308.5702	G78	239,908.8574	283,653.7942
G28	240,173.7902	283,332.1284	G79	239,941.2204	283,676.7769
G29	240,142.8655	283,340.8680	G80	239,943.8601	283,682.6814
G30	240,136.9929	283,342.1797	G81	239,954.8106	283,698.2860
G31	240,122.9751	283,344.5432	G82	239,955.8718	283,700.1048
G32	240,106.9378	283,346.8038	G83	239,956.2986	283,701.4674
G33	240,087.3918	283,349.5599	G84	239,966.2742	283,719.0992
G34	240,064.3119	283,357.5198	G85	239,969.9114	283,724.7754
G35	240,051.1510	283,361.0552	G86	239,950.7632	283,724.7608
G36	240,032.2672	283,366.1232	G87	239,942.2923	283,724.7530
G37	239,997.8231	283,375.1245	G88	239,921.6547	283,723.1653
G38	239,995.3178	283,369.1872	G89	239,908.4723	283,722.1502
G39	239,936.8115	283,380.6323	G90	239,893.6120	283,721.0061
G40	239,925.8678	283,426.0002	G91	239,862.1167	283,718.4591
G41	239,916.5346	283,446.6443	G92	239,852.8097	283,716.4869
G42	239,900.3036	283,483.8370	G93	239,849.5007	283,715.7861
G43	239,868.1059	283,472.1293	G94	239,769.3990	283,710.8099
G44	239,853.0804	283,463.2591	G95	239,756.0389	283,709.7633
G45	239,848.5809	283,462.0513	G96	239,741.4187	283,707.3912
G46	239,831.5959	283,464.5832	G97	239,697.7856	283,699.9129
G47	239,818.1746	283,469.2821	G98	239,676.5705	283,686.3065
G48	239,809.5760	283,473.3698	G99	239,654.3147	283,687.7203
G49	239,806.5770	283,475.1722	G100	239,647.4412	283,691.9010
G50	239,792.6895	283,483.6473	G101	239,572.0606	283,682.3108
G51	239,779.7528	283,507.0572	G102	239,552.5746	283,684.8156

좌표번호	X(N)	Y(E)	좌표번호	X(N)	Y(E)
G103	239,543.5800	283,681.9269	G156	239,770.2335	283,170.5212
G104	239,530.6816	283,677.6143	G157	239,791.1938	283,166.8322
G105	239,531.2305	283,664.5224	G158	239,791.4240	283,166.8915
G106	239,534.5888	283,588.1324	G159	239,791.3793	283,166.4114
G107	239,536.3814	283,547.0824	G160	239,803.1329	283,139.7698
G108	239,519.9292	283,526.0906	G161	239,808.6953	283,123.3573
G109	239,517.8241	283,523.4049	G162	239,817.2513	283,113.3863
G110	239,517.9067	283,521.5138	G163	239,820.0513	283,111.1429
G111	239,518.1148	283,516.7486	G164	239,832.4431	283,098.7613
G112	239,518.9174	283,498.3795	G165	239,848.9938	283,087.1674
G113	239,521.9455	283,494.0250	G166	239,866.8371	283,076.7254
G114	239,539.8207	283,468.3302	G167	239,867.9827	283,076.0560
G115	239,540.8110	283,445.6624	G168	239,872.9803	283,072.0995
G116	239,541.6735	283,425.9127	G169	239,883.4562	283,062.9376
G117	239,517.3300	283,401.2487	G170	239,897.9100	283,053.3897
G118	239,514.4696	283,396.3908	G171	239,903.5474	283,049.6653
G119	239,511.4735	283,380.7295	G172	239,910.3375	283,044.6822
G120	239,522.0580	283,366.3373	G173	239,929.6920	283,032.3131
G121	239,523.4402	283,364.6128	G174	239,974.1346	283,003.9125
G122	239,529.5193	283,361.8016	G175	239,985.4841	282,974.2645
G123	239,541.1938	283,352.4593	G176	239,986.6418	282,971.2384
G124	239,558.8015	283,338.7474	G177	239,987.1707	282,970.3894
G125	239,572.5252	283,339.2000	G178	239,991.0189	282,964.2149
G126	239,582.2693	283,337.0179	G179	239,997.0008	282,961.3437
G127	239,597.2055	283,335.0000	G180	240,048.7000	282,936.9451
G128	239,612.0014	283,325.5981	G181	240,053.7000	282,921.7541
G129	239,617.0074	283,326.5190	G182	240,059.8320	282,915.4712
G130	239,629.3421	283,323.5789	G183	240,080.5506	282,904.6240
G131	239,655.2054	283,324.1360	G184	240,121.8180	282,921.7803
G132	239,670.6271	283,318.5053	G185	240,126.0837	282,924.2761
G133	239,669.0630	283,311.8797	G186	240,147.5257	282,939.6973
G134	239,675.2953	283,302.5361	G187	240,165.7002	282,958.8617
G135	239,678.6070	283,297.5707	G188	240,175.3771	282,966.4305
G136	239,684.9020	283,292.4416	G189	240,189.1116	282,984.1198
G137	239,690.7287	283,290.6438	G190	240,216.4633	283,019.3309
G138	239,696.7809	283,282.4300	G191	240,227.0605	283,035.1167
G139	239,702.1150	283,273.1816	G192	240,236.2637	283,054.1125
G140	239,710.3268	283,264.9289	G193	240,254.3953	283,099.8392
G141	239,698.4686	283,250.1890	G194	240,255.7801	283,111.4705
G142	239,691.1203	283,237.8059	G195	240,265.9971	283,137.2360
G143	239,685.3833	283,229.6508	G196	240,270.6699	283,148.0443
G144	239,686.9321	283,215.5104	G197	240,290.0270	283,182.0307
G145	239,687.2746	283,214.5503	G198	240,319.0549	283,231.4496
G146	239,688.9609	283,212.0385			
G147	239,690.2800	283,210.7514			
G148	239,697.8338	283,206.5319			
G149	239,717.3190	283,199.4632			
G150	239,718.0440	283,198.9634			
G151	239,723.3476	283,195.2967			
G152	239,744.0867	283,188.2546			
G153	239,746.7292	283,186.0424			
G154	239,757.0047	283,178.4869			
G155	239,762.7518	283,174.9433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기업지원과(055-940-33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거창군청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기정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합 계					324,287	
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전	820	산양종합개발
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50		과	2,614	산양종합개발
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4	목	2,462	산양종합개발
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3	답	834	산양종합개발
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	2	답	1,221	산양종합개발
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4	1	답	1,008	산양종합개발
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4	2	답	1,330	산양종합개발
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7	2	답	300	산양종합개발
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8	1	전	19	산양종합개발
1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9		전	876	산양종합개발
1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0		답	1,468	산양종합개발
1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2	1	답	5,016	산양종합개발
13	거창군 남상면 대신	1423		도	225	산양종합개발
14	거창군 남상면 대신	1429		답	52	산양종합개발
1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0		답	52	산양종합개발
1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1		답	1,620	산양종합개발
1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	전	619	산양종합개발
1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2	전	1,545	산양종합개발
1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4	창	130	산양종합개발
2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5	임	128	산양종합개발
2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9	임	29	산양종합개발
2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0	전	1,929	산양종합개발
2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11	과	358	산양종합개발
2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목	1,253	산양종합개발
2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8	구	1,177	농림축산식품부
2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29	구	811	농림축산식품부
2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	30	구	482	농림축산식품부
2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17	1	구	1,587	농림축산식품부
2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32		구	364	농림축산식품부
3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65	2	임	198	산양종합개발
3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8	1	임	132	산양종합개발
3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		임	8,529	산양종합개발
3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	2	임	198	산양종합개발
3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1		임	1,289	산양종합개발
3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임	152,686	산양종합개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3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3		임	298	산양종합개발
3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4		임	298	산양종합개발
3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1	2	임	126	산양종합개발
3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2	2	임	16	산양종합개발
4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59		구	157	농림축산식품부
4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1		구	158	농림축산식품부
4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2		구	262	농림축산식품부
4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3		구	101	농림축산식품부
4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4	1	구	64	농림축산식품부
4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5	1	구	270	농림축산식품부
4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86		구	511	농림축산식품부
4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	전	868	산양종합개발
4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3	전	679	산양종합개발
4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4	전	1,693	산양종합개발
5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5	전	208	산양종합개발
51	거창군 남상면 대신	949	1	답	1	산양종합개발
52	거창군 남상면 대신	949	6	답	541	산양종합개발
53	거창군 남상면 대신	949	7	답	280	산양종합개발
5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8	답	10,72	산양종합개발
5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9	도	260	산양종합개발
5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0	도	1,346	산양종합개발
5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1	답	2,119	산양종합개발
5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3	과	493	산양종합개발
5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4	과	499	산양종합개발
6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5	과	843	산양종합개발
6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2	전	1,035	산양종합개발
6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6	답	1,229	산양종합개발
6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7	도	438	산양종합개발
6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8	도	41	산양종합개발
6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19	목	813	산양종합개발
6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0	목	1,103	산양종합개발
6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1	답	3,064	산양종합개발
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2	답	3,200	산양종합개발
6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4	도	50	산양종합개발
7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5	도	124	산양종합개발
7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3	도	490	산양종합개발
7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6	구	4,118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7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27	구	27	농림축산식품부
7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2	임	41	산양종합개발
7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1	임	16	산양종합개발
7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3	임	44,031	산양종합개발
7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4	임	198	산양종합개발
7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5	임	631	산양종합개발
7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6	목	27,708	산양종합개발
8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7	임	129	산양종합개발
8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8	임	397	산양종합개발
8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9	임	7,012	산양종합개발



○ 변경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합 계					308,151.1	
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2		공	2,431.2	
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3		장	7,478.7	
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4		장	7,506.6	
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5		장	6,492.7	
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6		장	4,237.3	
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7		공	523.7	
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8		유	2,818.1	
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9		공	1,995.7	
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0		장	5,219.5	
1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1		장	5,147.3	
1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2		장	5,010.2	
1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3		장	4,308.7	
1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4		장	3,246.8	
1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5		공	12,220.3	
1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6		잡	356.7	
1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7		차	1,121.1	
1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8		유	2,812.1	
1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9		장	3,215.8	
1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0		장	3,569.8	
2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1		장	3,569.9	
2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2		장	3,570.0	
2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3		장	3,649.8	
2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4		잡	304.9	
2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5		장	2,729.7	
2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6		장	3,481.3	
2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7		장	3,537.2	
2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8		장	3,520.1	
2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9		장	2,976.3	
2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0		장	4,089.1	
3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1		장	4,235.9	
3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2		장	4,252.9	
3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3		장	4,252.7	
3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4		장	4,167.8	
3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5		장	2,758.9	
3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6		장	2,597.4	
3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7		장	2,690.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3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8		장	4,239.7	
3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9		장	4,252.9	
3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0		장	4,252.9	
4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1		장	4,230.8	
4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2		장	3,941.2	
4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3		장	4,684.1	
4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4		장	5,890.5	
4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5		공	5,312.5	
4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6		장	9,582.2	
4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7		장	5,983.2	
4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8		장	3,649.7	
4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9		장	3,560.2	
4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0		유	8,271.6	
5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		장	4,480.7	
5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2		장	4,204.4	
5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3		잡	16.0	
5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4		공	4,119.1	
5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5		장	1,729.7	
5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6		장	4,098.1	
5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7		장	4,081.0	
5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8		공	2,309.1	
5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9		공	3,604.2	
5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0		대	868.0	
6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1		대	1,001.8	
6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2		공	571.7	
6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3		차	1,345.5	
6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4		대	737.3	
6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5		대	1,015.9	
6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6		대	982.0	
6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7		대	969.7	
6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8		대	963.4	
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9		대	1,513.5	
6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0		공	9,885.7	
7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1		구	22.8	
7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2		도	23,712.9	
7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3		도	4,247.3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7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4		도	8,218.9	
7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5		도	6,821.8	
7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6		도	1,879.2	
7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7		도	5,554.5	
7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48		도	549.4	



거창군 고시 제2017-6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5. 1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87 외 1건(부여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일 (일련번호)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고시내용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실(☎ 055-940-3311~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0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87	2009-12-28	2017-05-17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104-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길 360-49	2009-04-01	2017-05-17	남상면 오계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청

거창군 공고 제2017-595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소야마을 진입로(신원30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소야마을 진입로(신원305호선) 개설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700.0m, B=6.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일원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5. 11. ~ 2017. 5. 26.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557)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로 알리고,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재건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읍,면	리,동	본번	분할	대장상	현실상	대장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산172	산 172-2	임야	임야	6956	77	428	박중*
2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산173	산 173-2	임야	임야	26442	92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	함양오씨*** 파종중회
					산 173-3	임야	임야		78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	함양오씨*** 파종중회
					산 173-4	임야	임야		88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	함양오씨*** 파종중회
					산 173-5	임야	임야		288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	함양오씨*** 파종중회
					산 173-6	임야	임야		2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	함양오씨*** 파종중회
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78-1		도	도로	109	109	미등기	박현*
4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77-1		임야	도로	59	159	미등기	박준*
5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77-2		임야	도로	36	109	미등기	박광*
6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74		임야	도	136	136	미등기	정기*
7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60-1		전	전	172	172	거창군 신원면 소야1길 **	박시*
8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60-2		도로	도로	112	112	미등기	박한*
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9-1		도로	도로	7	7	미등기	강지*
1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9-3	959-5	전	전	322	11	일본국 동대판시 미광 정 3-*	정건*
11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9-2	959-4	전	전	495	16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 ***동 ***호	조경*
12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7-2	957-3	전	전	545	73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구정*
1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7-1		도로	도로	60	60	미등기	이근*
14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6-2		도로	도로	10	10	미등기	박도*
15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6-1	956-3	대	대	400	1	거창군 신원면 소야1길 **	박시*
16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29-1	929-4	답	답	1954	21	거창군 신원면 소야1길 **	박시*
					929-5	답	답		86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시*
17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29-3		도로	도로	69	69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시*

18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29-2		도로	도로	60	60	미등기	이상*
1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0-3		도로	도로	73	7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	김득*
2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0-2		도로	도로	93	9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	김득*
21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0-1	930-4	답	답	1620	73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현*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봉*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영*
22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1-1	931-5	답	답	2850	48	거창군 신원면 소야1 길 ***-*	박현*
2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1-3		도로	도로	102	102	미등기	박윤*
24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1-2		도로	도로	89	89	미등기	박윤*
25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2-2	952-4	답	답	5193	20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 ***동 ***호 (**아파트)	강영*
26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2-1		도로	도로	73	73	미등기	강태*
27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52-3		도로	도로	13	13	미등기	강태*
28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0-3	930-3	답	답	5157	12	거창군 신원면 소야2 길 ***	이종*
						답	답		12	거창군 신원면 소야2 길 ***	이종*
2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5-2		도로	도로	20	20	미등기	박장*
3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4-3	934-4	도로	도로	245	35	미등기	박수*
31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34-2		도로	도로	122	122	미등기	박수*
32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44-1		도로	도로	43	4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4**	와룡**마 을회
3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44-2	944-3	답	답	5193	17	거창군 신원면 소야2 길 ***	이종*
합계									3001		

거창군 공고 제2017-598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 : 소로 3 - 21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5.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21호선)	거창	대평	소로	3	21	213.0	6.0	1,282	거창읍 대평리 1452-23번지 ~ 거창읍 대평리 1485-140번지	경상남도 고시1985-211호 (1985.12.28)	2017.05~ 2018.12.31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3-2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949	1,282					
1	거창읍 대평리	1452-23	구	63	61		국(농림수산부)			
2	"	1473-3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3	"	1232-39	종	137	137	마산시 완월동 206	재단법인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4	"	1232-38	도	42	42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77-1	이 준 식			
5	"	1232-1	대	225	36	거창읍 대평리 1232-1	이 상 공			
6	"	1231-4	대	93	15	남상면 둔동리 555	최 성 영			
7	"	1227	대	46	31	거창읍 대평리 1224	김 종 희			
8	"	1170-1	대	294	65	거창읍 대평리 1170-1	이 경 휘			
9	"	1163	대	288	99	거창읍 대평리 1163	김 수 기			
10	"	1154-1	대	75	3	거창읍 대평리 1154-1	거 창 군			
11	"	1485-0	도	55	4	국(국토교통부)				
12	"	1234-5	학	73	73		경상남도(교육감)			
13	"	1473-2	대	112	6		거 창 군			
14	"	1233-3	학	185	185		경상남도(교육감)			
15	"	1233-1	대	433	49		경상남도(교육감)			
16	"	1231-7	대	264	66	거창읍 대평리 1231-7	정 언 호			
17	"	1231-2	도	588	25	동동	신 창 재			
18	"	1224	대	66	4	거창읍 창남4길 45	김 종 희			
19	"	1226	대	79	46	거창읍 대평리 1226	백 영 범			
20	"	1171	대	631	27	거창읍 대평리 1171	정 옥 자			
21	"	1473-14	도	2,709	87		국(국토교통부)			
22	"	1485-43	대	69	50		국(기획재정부)			
23	"	1485-164	도	293	9		국(국토교통부)			
24	"	1485-40	대	1	1		국(기획재정부)			
25	"	1485-140	도	1,064	59		국(기획재정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 (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sbin02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7-603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거창군수

시설(지역)명	대상 시설		지정 (등급)	안전점검·관측 주기 및 간한	비고
	소재지	종류 (소유자명 등)			
(구)장풍교	마리면 율리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E등급 판정	- 매월2회 안전점검 실시 -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 문의처 : 거창군 건설과 (☎ 055-940-3533)
- 거창군 안전총괄과 (☎ 055-940-3793)

거창군 공고 제2017-606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 개정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와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 인구증가정책 추진: 행정과 ⇒ 기획감사실
- 120봉사대 운영: 안전총괄과 ⇒ 복지정책과

나.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신설함(안 제3조)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 창포원 관리·운영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6. 의견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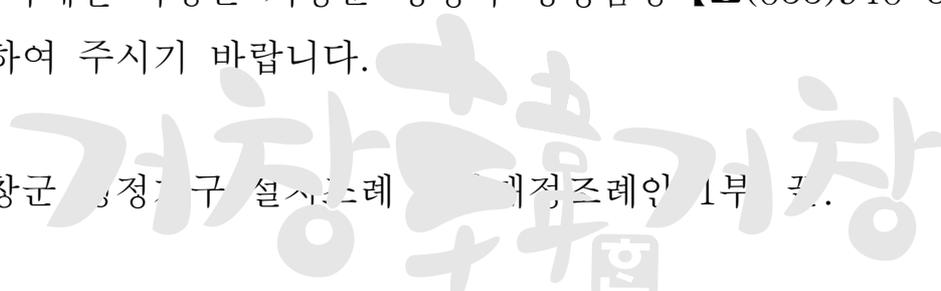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1부 등.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와 주민 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 인구증가정책 추진: 행정과 ⇒ 기획감사실
- 120봉사대 운영: 안전과 ⇒ 복지정책과

나.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신설함(안 제5조)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 창포원 관리·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2017. 5. 11. ~ 5. 31.(20일간)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서비스 연계, 기초생활 및 120봉사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7호라목 중 “120봉사대 운영”을 “CCTV관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 마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사, 목재문화 ”임장, 창포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실·과의 설치)①(생략)</p> <p>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장 가. ~ 바.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생략)</p> <p>3. 행정과장 가. ~ 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 5. (생략)</p> <p>6. 복지정책과(신설 2007. 1. 2) 가.·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다. 서비스 체계 및 기초생활보장 관한 사항</u></p> <p>라. ~ 사. (생략)</p> <p>7. 안전총괄과장 가. ~ 다. (생략)</p> <p>라. 민방위 및 <u>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마. CCTV관제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9. 문화관광과장 가. ~ 라. (생략)</p> <p>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u>문화원사</u>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10.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 가.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다. 서비스 체계 기초생활보장 및 120봉사대에 관한 사항</u></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p>7.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CCTV관제</u>----- -----</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8. (현행과 같음)</p> <p>9.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 <u>문화원사, 목재문화 체험장, 창포원</u> --</p> <p>10. ~ 13.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 등)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정 전반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사항

나. 홍보 및 공보에 관한사항

다.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사항

마. 법제·쟁송 및 계약에 관한사항

바. 규제개혁에 관한사항

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사항

2. 민원봉사실장

가. 창구민원과 민원행정에 관한사항

나.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사항

다.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사항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과장

가.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운용에 관한사항

나. 각종행사 및 읍·면행정지도,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사항

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라. 지방행정구역 조정, 선거, 주민등록 및 대외협력에 관한사항

마. 행정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바. <삭 제>

4. 기업지원과장

가. 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

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무과장

가.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및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나. 세출예산 집행·결산,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복식부기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세외수입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 및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사항

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가. 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연계, 기초생활, 및 120봉사대에 관한 사항

라.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사항

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총괄과장

가.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인적·물적·사회적 재난, 화재·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및 CCTV관제에 관한 사항

마. <삭 제>

8. 경제교통과장

가.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다.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9.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사항

나. 관광 및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항

다. 수승대관광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림과장

가. 산림사업 및 보호에 관한사항

나. 산림자원 관리·이용 및 산지소득에 관한사항

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임산물 생산, 화강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11. 환경과장

가. 환경관리 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설과장

가. 건설행정에 관한사항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사항

다. 하천에 관한 사항

라.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 사항

13. 도시건축과장

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사항

나. 자전거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라. 건축사업 및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마.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 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이하 생략~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공고 제2017-606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실과소 소관업무와 읍·면 기관명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9조, 제9조의2)

○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업무: 안전총괄과 ⇒ 복지정책과

나.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 기관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별표 2, 별표 3)

○ 거창읍·주상면·위천면·남상면·가조면사무소

⇒ 거창읍·주상면·위천면·남상면·가조면 행정복지센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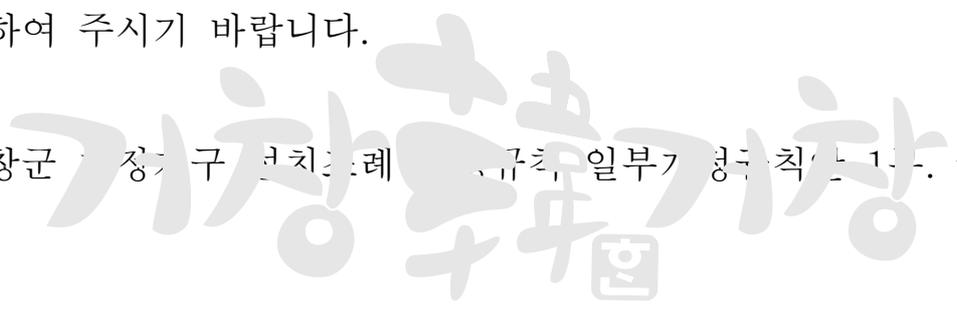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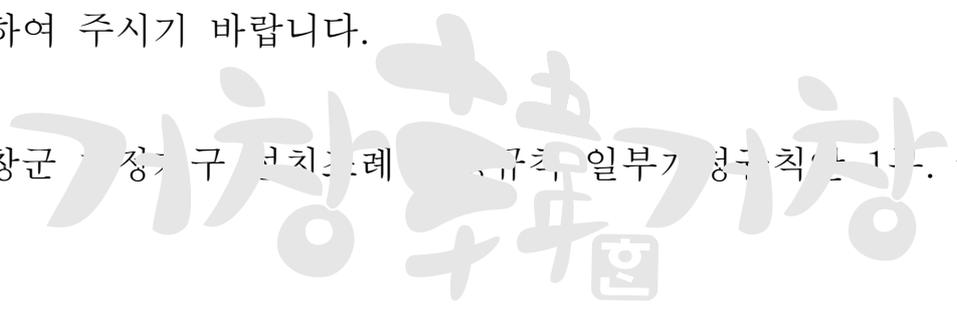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장기구 편찬사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실과소 소관업무와 읍·면 기관명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9조, 제9조의2)

○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업무: 안전총괄과 ⇒ 복지정책과

나.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 기관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별표 2, 별표 3)

○ 거창읍·주상면·위천면·남성면·남성면사무소

⇒ 거창읍·산남면·위천면·남성면·남성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5. 11.~5. 31.(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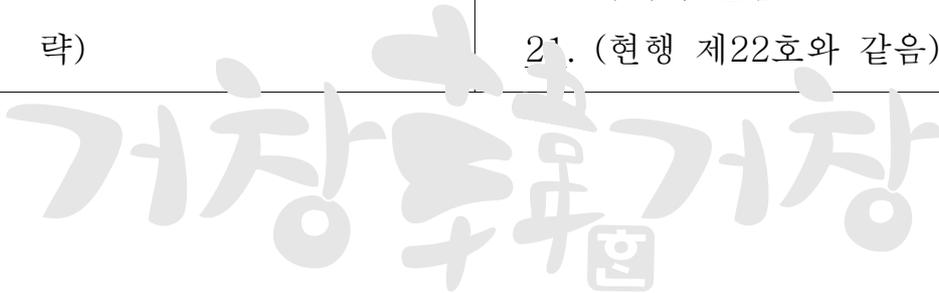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복지정책과) 1.~38.(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39. (생략)</p> <p>제9조의2(안전총괄과) 1.~15.(생략)</p> <p>16.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업무</p> <p>17. ~ 22. (생략)</p> <p>22. (생략)</p>	<p>제9조(복지정책과) 1.~38.(현행과 같음)</p> <p>39.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업무</p> <p>40. (현행 제39호와 같음)</p> <p>제9조의2(안전총괄과) 1.~15.(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16. ~ 21. (현행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p> <p>21. (현행 제22호와 같음)</p>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명	직 급 (복수)	관할구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창읍 일원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주상면 일원
응양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응양면 일원
고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 일원
북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림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 일원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위천면 일원
마리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 일원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 일원
남하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 일원
신원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신원면 일원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가조면 일원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 일원

[별표 3]

부읍·면장의 직급 및 직렬(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관련)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명	직급 및 직렬(복수)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웅양면사무소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마리면사무소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고제면사무소 북상면사무소 남하면사무소 신원면사무소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 등)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8조(생략)

제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과의 복지관련 업무 총괄
3. 지역사업의 개발·관리·운영 지원
4.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5.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조정·연계 및 결정·통지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8.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9.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10. 상담실 운영 및 관련 부서 연계
11. 긴급지원업무 추진
12. 이웃돕기, 후원회 및 사회봉사단 운영
13. 주민서비스 민선민구 관리
14.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업무
15. 서비스연계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6. 기초생활보장업무 계획수립·급여지원 및 수급자 관리
17.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및 특별회계 관리
18. 생활안정기금 운영
19.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정보제공
20. 노숙자·부랑인·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및 관리
21.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관리 및 지원
22. 자활사업추진 및 협의체 운영
23. 자원봉사 및 각종 자원봉사단체 관리 업무
24. 사회복지업무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5.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6. 노인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7.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8. 화장장려 및 장사 등에 관한 업무
29.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업무
30. 여성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31.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 육성에 관한 업무
32.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
33.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34.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5.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6.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관한 업무
37.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3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
- 39.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업무**
40. 그 밖에 복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업무

제9조의2(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안전 및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평가 등 총괄에 관한 업무
 2.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3. 재난상황실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도선장 관리 업무
 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6. 실종 등 인적사항 대응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피해 응급구급, 책수리, 추적 업무
 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안전 관리 관련 업무
 9. 유관 기관단체 재난관련 협의 조정 업무
 10. 재해영향성평가 업무
 11.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업무
 12.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안전점검·관리업무
 13. 방재 전산훈련 업무
 14.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교육 홍보 업무
 15.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관련 업무
 16. <삭 제>
 16. 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
 1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18.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업무
 19.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동원 업무
 20. CCTV관제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재해, 재난 및 민방위 관련 업무
- ~이하 생략~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공고 제2017-60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2. 개정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 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변동없음

- 현행 :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2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6. 의견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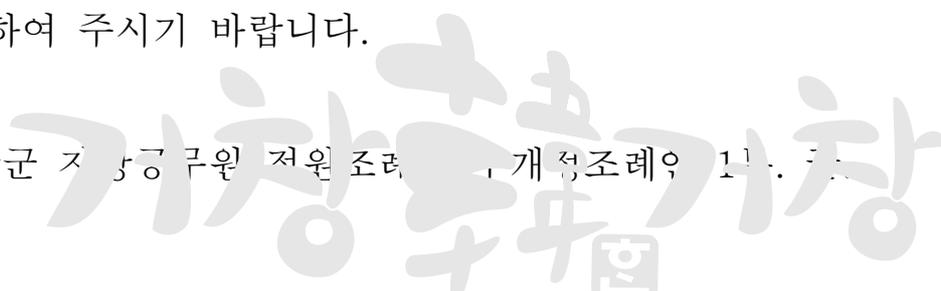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자치법규원 전원 조례 개정조례 11.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변 없음
 - 현행 : 60명(본청2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08명)
 - 조정 :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같음
- (2) 입법예고 : 2017. 5.11. ~ 5.31.(20일간)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청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6	284	14	133 135	69 71	64	54	40	151 149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4	280	14	106 108	42 44	64	53	40	151 149
	4급	1	1							
	4~5급	3					1			
	5급	35	11	3	4	1	4	1	11	
	6급 이하	605	266	11	100 102	38 40	62	49	39	140 138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다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하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7-60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89명 → 90명(행·복 1)

나.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직속기관 7급(감1): 38명 → 37명(행·농 1)

다. 일반직 9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면 9급(증2): 22명 → 24명(복지 2)

라. 일반직 9급 정원 감원 2명(안 별표)

- 본청 9급(감1): 31명 → 30명(복지 1)
- 직속기관 9급(감1): 9명 → 8명(행·농 1)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013-21-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l@k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가축방역체계 개선,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목재문화체험장, 창포원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89명 → 90명(행·복 1)

나.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직속기관 7급(감1): 38명 → 37명(행·농 1)

다. 일반직 9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면 9급(증2): 22명 → 24명(복지 2)

라. 일반직 9급 위 감원 2명(안 별표)

- 본 청 9급(감1): 31명 → 30명(복지 1)
- 직속기관 9급(감1): 9명 → 8명(행·농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5. 11. ~ 5. 31.(20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관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과 특인, 특감상 등 단체에 특약할 수 있는 구·분과의 인력

④ 시·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
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
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창군청

거창군 공고 제2017-608호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명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기관명 면 명칭 개정(안 별표)
 - 주상면사무소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남상면사무소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청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주상면사무소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남상면사무소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11. ~ 5. 31.(20일간)
 - (나) 예고결과: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하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개 정 사유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응양면 사무소	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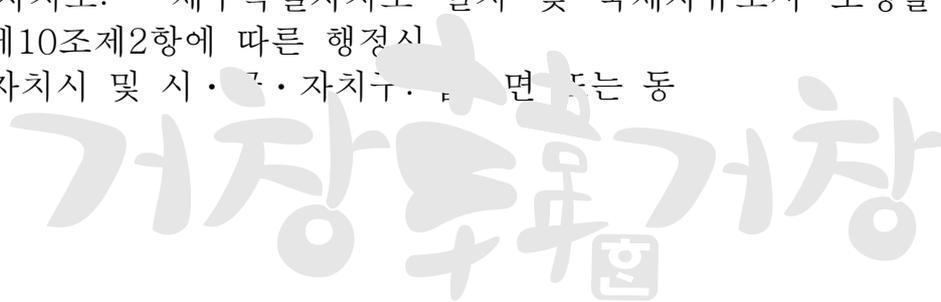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